



Q

1. 2004년 1월 8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한 직장(건물위 탁관리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 되었습니다. 억울하지만 퇴직금만 정산 되면 참으려 했는데 문제는 퇴직금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서 아 예 퇴직금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처음 채용공고시 정 규직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었고 근로 계약서 작성 시에도 분명히 정규 직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계약서를 회사에서 보관하는 바람에 그 동안 단 한 번도 계약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비 정규직이고 임시직이라고 하면서 퇴직금을 못주겠다는데 제 경우 퇴직 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급합니다.

2. 그동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제 이름으로는 아예 가입하지 않아서 수회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지만 오늘 내일 미루 기만 하다가 결국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해고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비정규직, 임시직 등 여부에 관계 없이 귀하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할 것이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등을 파악하여 귀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

서에 진정 제기 등의 신고를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민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노동 부홈페이지(www.molab.go.kr) \rightarrow 전자민원창구 \rightarrow (새창에서) 민원신청 \rightarrow 온라인민원신청 \rightarrow 체불 임금구제 신청하기〉를 통해서도 진정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O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나 취득(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귀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나, 고용보험법 제86조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저는 외국계 한 회사의 회계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상사로부터 불합리한 폭언(욕지거리) 와 폭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폭행이유가 제가 물어보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였으나 사실 나중에는 자기가 오해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이 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직원들도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 1. 이런 상사를 노동사무소에 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 이 상사에게 앞으로 폭언, 폭행을 다시 할 경우 처벌을 감수한다는 각서를 받아놓으면 그 효력 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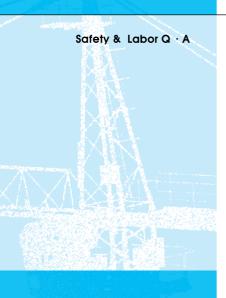


근로기준법 제7조에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귀 질의내용이 일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개인 대 개인의 사적 관계에서 행하여진 폭행은 일반 형사문제가 되지만, 사용자가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는 것처럼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은 동 법의 규정에 위반임을 알려드리고, 귀하의 상사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인지 혹은 그러한 폭행이 사업주의 사주를 받아 행해진 것인지에 따라 동 법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상사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에 포함되고 폭행행위가 근로관계 중에 발생한 폭행이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귀하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으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가 질의한 상사에게 각서를 받아놓은 경우에 대해서는 노동법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민사적인 사건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재해 목표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저희 현장은 토목 턴키 공사로 공사 도급액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 공사임) 1차년('03년)에는 설계비만 반영되었습니다.(41억)

2차년에는 설계비와 공사보험, 가설사무실 축조 공사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30억) 3차년도는 공사비 43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 중에 무재해 개시보고를 누계공사금액 대비 35만



시간으로 목표시간을 산정했는데, 설계비와 공사보험이 누계공사금액에 포함되어 목표시간 산정이 되는지요. 아니면 제외하고 10만 시간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설업종의 무재해운동 목표시간은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 관련규정: 「사업장 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한 국산업안전공단규칙 제367호)

총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 상의 총 공사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및 해당 공 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예: 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의 시가환산 액 등)을 포함하나,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포 함하지 않습니다.

※ 미포함 항목 예: 민원처리비, 부지임차료, 공사손해보험료, 이주비, 설계비, 감리비, 대출이자, 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된 모델하우스건 립비, 분양계획 수립 및 운영비, 광고비, 입주비용 등

따라서 귀 현장은 설계비와 공사손해보험료를 제외한 무재해운동 개시시점의 누계 공사금액인 787,090,909원을 기준으로 목표시간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귀 현장의 무재해 1배 목표는 100,000시간입니다.



- 1.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자격이 F-1-4인 노동자(조선족)가 불법으로 산 업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요?
- 2.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이 E-9-D인 노동자(조선족)가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하여 근로한다면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는지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외국인 근로자도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하였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문의 관계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고용보험법상 외국인은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에 속하므로 퇴직금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림니다.

※ 노동부(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코너에서 발췌한 자료임.